

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5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2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가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증가하였고,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재정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고자 함.
 - 결산검사위원 중 1인을 군수의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,

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적
재정 감독 권한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정수에 사항(안 제2조)

- 위원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함

나.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(삭제) 다만,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다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10. ~ 5. 1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전단 중 “3인이상 5인이하”를 “3명 이상 1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처리하고”를 “처리하고,”로 한다.

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기금의 결산

제8조 중 “협조하여야”를 “협조해야”로 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서명하여야”를 “서명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별표 제2호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 촉 장

결산검사위원 ○ ○ ○

담양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
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
담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 년 월 일

담양군의회회의장(인)

[별표 1]

구 분	금 액
일 비	•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: 150,000원 • 그 밖의 위원: 120,000원
여 비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[별표 2]의 “국내 여비 지급표”상의 부군수의 상당액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위원의 정수) 담양군 결산 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 다)의 정수는 <u>3인이상 5인이하</u> 로 한다. 이 경우 담양군의회 의 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 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	제2조(위원의 정수) ----- ----- ----- <u>3명 이상 10명 이</u> <u>내</u>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		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담양 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선임한다. <u>다만, 위원중 1인은</u> <u>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</u> <u>다.</u> ② · ③ (생략)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 여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 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	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--- ----- ----- -----, <단서 삭제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 ----- -----.		
제6조(대표위원) ① <u>대표위원은</u> <u>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원이</u> <u>위원이 된다.</u>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<u>처리하고</u> 검사결과에 대 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		제6조(대표위원) ① <u>대표위원은</u> <u>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</u> <u>선출한다.</u> ② ----- ---- <u>처리하고</u> , ----- ----- -----.		

③ (생 략)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

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1. ~ 6. (생 략)

<신 설>

제8조(검사협조)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사 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

①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기금의 결산

제8조(검사협조) -----

----- 협조해야 -----.

제9조(검사 의견서의 제출) -----

----- 서명해야 -----
--.

----- 제출해야 -----
--.

제13조(지급기준) -----
----- 별표 1 -----
-----.
-----.